# 이혼등

[수원지방법원 2011. 11. 29. 2011르677]



## 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】원고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창우)

【피고,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】 피고

【사건본인】 사건본인

【제1심판결】수원지방법원 2011. 1. 12. 선고 2009드단13689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1. 10. 25.

#### 【주문】

# 

- 1.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- 가.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
- 나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,093,05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다.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,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
- 라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3,500,000원을 지급하고,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1. 11. 30.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
- 마.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,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- (1) 시기 및 장소 : 월 2회(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각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), 대구
- (2) 사건본인의 인도 방법
- (가) 토요일에는 원고가 출근하기 전에 피고 모친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.
- (나) 면접교섭을 마친 후 일요일에는 16:00 내지 17:00경에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사건본인을 데려다 준다.
- (3) 만약 피고가 면접교섭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주 목요일 저녁까지 전화 또는 문자로 면접교섭을 못하게 된 사정을 알려야 하고,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월 1회에 한하여 면접교섭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2.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46,124,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3.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,204,0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46,124,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3.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,204,0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46,124,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3.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,204,0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46,124,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3.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,204,0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46,124,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3.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,204,0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【청구취지,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,000,000원 및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재산분할로 46,124,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2.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3.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3,204,0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## 【이유】

## 11. 이 법원의 심판 범위

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의 각 청구를 하였는데, 제1심 법원은 그중 이혼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 각 청구를 받아들이고,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며,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.

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, 그 후 원고가 재산분할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.

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혼, 재산분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 각 청구이다(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심 법원이 직권으로 한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은 당원에서 직권으로 변경한다).

#### 2. 기초 사실

- 가. 원고와 피고는 2005. 6.경부터 동거하여 오다가 2006. 4.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. 30.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부부로서,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.
- 나.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, 피고의 연소득은 2008년도 5,800여만 원, 2009년도 5,600여만 원이다.

다.

-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, 2009. 6.경부터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옷가게에서 매장관리직원으로 일하였다.
- 라. 원고와 피고는 신혼 무렵 임대차보증금 4,500만 원의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고가 결혼 전에 저축한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위 보증금을 마련하였고, 그 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추가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, 피고의 소득으로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다.
-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의 1, 2, 을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제1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3.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이유 부분 중 사실인정의 근거 기재 부분에 당심에서 제출된 1 '을 제5호증의 기재'를 추가하고, 역시 같은 부분의 '가사조사관'을 '제1심 가사조사관'으로 고치며, 제1심 판결문제4면 제4행 '이 사건 제1차 조정기일'을 '이 사건 제1심 조정기일'로, 같은 면 제7행 '2010년부터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'을 '2010년부터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1즈기121호 사전처분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사건본인의 어린이집 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'로 각 고치고, 그 뒷 부분에 '⑥ 원고와 피고는 현재 별거 중인 사실'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,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- 4.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
  - 가.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: 별지 재산분할명세표와 같다.
  - 나.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- (1) 원고는 "피고가 동생 유학비를 위하여 동생에게 400만 원(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100만 원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다)을 대여하였으므로, 위 대여금 채권이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 1심 및 당심에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주장하다가 마지막 2011. 10. 20.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피고의 적극 재산으로 주장하였으며, 제1심에서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(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"피고가 제1심 가사조사시 동생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"고 주장하나, 제1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"위 금원을 동생에게 유학비 조로 증여하였다"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).
- (2) 원고는 "피고의 스포티지 자동차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위 자동차의 시가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, 제1심에서 원고가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기록 상 명백한바,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- (3) 피고는 "원고의 국민은행 계좌( 계좌번호 1 생략, 계좌번호 2 생략)와 신라상호저축은행 계좌 (계좌번호 3 생략)의 잔고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을 제7, 8,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. 7. 초경 위 계좌를 모두 해지하여 금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시점에 원고가 사건 본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,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,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그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.
- (4) 피고는 "원고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각종 보험의 해약환급금(무배당 High5 건강보험 1,070,000원, 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 변액유니버셜보험 1,600,000원, 미래에셋친디아 변액연금적립형 5,800,000원,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Hi0701 690,000원)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을 제12, 14, 15, 16,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해약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, 나아가 일부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위하여 가입한 것이고, 일부는 원고가 보험을 해약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,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- (5) 피고는 "원고의 동생에 대한 470만 원의 대여금 채권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"고 주장하나,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(6) 피고는 "원고가 결혼 예물 및 사건본인의 돌반지 등 시가 500여만 원을 가져갔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(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. 6. 16.경 결혼 예물 등을 도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).
- (7) 피고는 "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(계좌번호 4 생략) 대출금 채무 14,364,6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 당시 위 채무가 피고의 소극재산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(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집을 나간 당시 피고 주장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다), 피고 주장의 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.

다만,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.

다.

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

#### (1) 재산분할의 비율

위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정생계가 유지되었던 점, 원고가 주부로서 생활하다가 매장관리직원을 하여 번 돈으로 가계에 보탬이 된 점, 원고와 피고의 공동 주거 마련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가 큰 점, 원고가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,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 양육비만을 구하고 있는 점, 원고와 피고가 동거를 시작한 때부터 원고가 가출한 시점까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산 기간은 4년에 이르는 점,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발생한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가지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는 27%, 피고는 73%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.

#### (2) 재산분할의 방법

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태,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, 그 재산분할의 방법은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,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.

(3)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: 15,093,058원

# 【이유】

## 11. 이 법원의 심판 범위

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, 위자료, 재산분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의 각 청구를 하였는데, 제1심 법원은 그중 이혼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 각 청구를 받아들이고,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며,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.

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, 그 후 원고가 재산분할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다.

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이혼, 재산분할,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, 양육비 각 청구이다(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심 법원이 직권으로 한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은 당원에서 직권으로 변경한다)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### 2. 기초 사실

- 가. 원고와 피고는 2005. 6.경부터 동거하여 오다가 2006. 4.경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1. 30.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부부로서,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.
- 나.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, 피고의 연소득은 2008년도 5,800여만 원, 2009년도 5,600여만 원이다. 다.
-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, 2009. 6.경부터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옷가게에서 매장관리직원으로 일하였다.
- 라. 원고와 피고는 신혼 무렵 임대차보증금 4,500만 원의 주택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고가 결혼 전에 저축한 돈과 은행 대출금 등으로 위 보증금을 마련하였고, 그 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추가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, 피고의 소득으로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다.
- 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2호증의 1, 2, 을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제1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- 3.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
-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이유 부분 중 사실인정의 근거 기재 부분에 당심에서 제출된 1 등 제5호증의 기재'를 추가하고, 역시 같은 부분의 '가사조사관'을 '제1심 가사조사관'으로 고치며, 제1심 판결문제4면 제4행 '이 사건 제1차 조정기일'을 '이 사건 제1심 조정기일'로, 같은 면 제7행 '2010년부터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'을 '2010년부터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1즈기121호 사전처분 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사건본인의 어린이집 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'로 각 고치고, 그 뒷 부분에 '⑥ 원고와 피고는 현재 별거 중인 사실'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,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4.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

- 가. 분할대상 재산 및 그 가액: 별지 재산분할명세표와 같다.
- 나.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- (1) 원고는 "피고가 동생 유학비를 위하여 동생에게 400만 원(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중 100만 원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였다)을 대여하였으므로, 위 대여금 채권이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위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제 1심 및 당심에서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주장하다가 마지막 2011. 10. 20.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피고의 적극 재산으로 주장하였으며, 제1심에서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(원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"피고가 제1심 가사조사시 동생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"고 주장하나, 제1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"위 금원을 동생에게 유학비 조로 증여하였다"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다).

- (2) 원고는 "피고의 스포티지 자동차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위 자동차의 시가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, 제1심에서 원고가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기로 진술하였던 사실은 기록 상 명백한바,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- (3) 피고는 "원고의 국민은행 계좌( 계좌번호 1 생략, 계좌번호 2 생략)와 신라상호저축은행 계좌 (계좌번호 3 생략)의 잔고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을 제7, 8,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. 7. 초경 위 계좌를 모두 해지하여 금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시점에 원고가 사건 본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,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,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그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. 따라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.
- (4) 피고는 "원고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각종 보험의 해약환급금(무배당 High5 건강보험 1,070,000원, 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 변액유니버셜보험 1,600,000원, 미래에셋친디아 변액연금적립형 5,800,000원, 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Hi0701 690,000원) 역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을 제12, 14, 15, 16,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해약환급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, 나아가 일부는 원고가 사건본인을 위하여 가입한 것이고, 일부는 원고가 보험을 해약하여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,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- (5) 피고는 "원고의 동생에 대한 470만 원의 대여금 채권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"고 주장하나, 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- (6) 피고는 "원고가 결혼 예물 및 사건본인의 돌반지 등 시가 500여만 원을 가져갔으므로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(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. 6. 16.경 결혼 예물 등을 도난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).
- (7) 피고는 "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(계좌번호 4 생략) 대출금 채무 14,364,62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"고 주장하나, 이 사건 사실심 변론 종결시 당시 위 채무가 피고의 소극재산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(제1심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집을 나간 당시 피고 주장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), 피고 주장의 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.

다만,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.

다.

재산분할의 방법과 비율

(1) 재산분할의 비율

위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정생계가 유지되었던 점, 원고가 주부로서 생활하다가 매장관리직원을 하여 번 돈으로 가계에 보탬이 된 점, 원고와 피고의 공동 주거 마련에 있어서 피고의 기여가 큰 점, 원고가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,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 양육비만을 구하고 있는 점, 원고와 피고가 동거를 시작한 때부터 원고가 가출한 시점까지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산 기간은 4년에 이르는 점,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발생한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 및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가지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는 27%, 피고는 73%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.

### (2) 재산분할의 방법

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태, 소유 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, 그 재산분할의 방법은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,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.

(3)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: 15,093,058원